

## Article

## 해양경계획정에서 지질 및 지형적 요소의 효과에 관한 고찰

양희철<sup>1\*</sup> · 박성욱<sup>1</sup> · 정현수<sup>1</sup> · 이희일<sup>2</sup><sup>1</sup>한국해양연구원 정책연구실<sup>2</sup>한국해양연구원 해양환경연구본부

(425-600)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29

## The Role of Geological and Geomorphological Factors in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Hee Cheol Yang<sup>1\*</sup>, Seong Wook Park<sup>1</sup>, Hyeon Su Jeong<sup>1</sup>, and Hi-Il Yi<sup>2</sup><sup>1</sup>Policy Research Division, KORDI<sup>2</sup>Marine Environment Research Department, KORDI

Ansan P.O. Box 29, Seoul 425-600, Korea

**Abstract :** A reference to natural prolongation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the *North Sea Judgement*. Although it was not suggested that the concept of natural prolongation would automatically allow for the fixing of a continental shelf boundary, that concept encouraged States to request international tribunals to determine continental shelf boundaries on the basis of the geological and geomorphological features of the seabed. In the *Libya v. Malta Case*, however, the rejection of geological and geomorphological factors was total. Especially, Natural prolongation was then checkmated as a relevant fact in delimitation between coasts situated less than 400 nm. apart. There can be no doubt that, in several disputed cases, prominent geomorphological variations are simply ignored ; nevertheless, there are also a few agreements where geological and geo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come into play and, to a certain extent, affect maritime boundaries.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ea-bed are generally given serious consideration in the boundary delimitation such as the final negotiated boundary of the Australia-Indonesia Continental Shelf boundary Agreement(Timor and Arafura seas) which follows the continental slope bordering the Timor Trench.

**Key words :**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geological and geomorphological factors, equidistance line, principle of equality, principle of natural prolongation, special circumstances, relevant circumstances, continental shelf

## 1. 서 론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점입가경이다.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분쟁은 사실상 국가에 해양 관할권을 부여한 시기와 동시에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작금의 행태는 그 범위와 대상, 목적 그리고 해양이 향후 연안국에 주

는 의미 등의 모든 면에서 과거의 그것과 단순 비교될 수 없는 가치를 갖는다.

과거 해양을 둘러싼 분쟁은 경계획정 국가간의 국제하천(International rivers), 해협(Strait), 만(Bay)의 경계획정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현대적 의미에서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의 시작은 19세기 초 영해제도가 보편적으로 인정된 때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영해제도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19세기 초, 각국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관점 역시 여전히

\*Corresponding author. E-mail : ceaser@kordi.re.kr

영해의 외측 한계(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에 관한 것이었으며<sup>1)</sup>, 대항국 혹은 인접국간 관할권 중첩의 문제는 1945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트루먼선언(The Truman Proclamation)》<sup>2)</sup> 이후에 시작되었다<sup>3)</sup>. 트루먼선언 이후,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영해 이원의 대륙붕과 상부수역 자원에 대한 권리요구가 시작되었고, 1970년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세계 각국은 어업과 항행활동에 한정하였던 해양 이용행태에서 벗어나 다량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대륙붕으로의 관할권 확대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게 되었다. 그 결과 확대된 국가 관할권 중복으로 인한 인접 또는 대항하는 국가간의 경계획정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sup>4)</sup>.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 즉 해양경계획정에 적용될 일반원칙을 국제적으로 성문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20세기 초부터 여러 국제법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1949년부터 개최된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로 부터 시작되었다. 국제법위원회의 토론은 직접 1958년 제1차 해양법회의로 이어졌고, 영해와 접속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경계획정원칙이 성문화되기에 이르렀다<sup>5)</sup>. 이후, 영해의 경계획정 원칙은 국가간 협정 또는 국제관례를 통해 성문화 내지는 국제관습법화 되었으나<sup>6)</sup>, 대륙붕 경계획정 원칙은 해양과학기술의 발달로 개발 가능성의 증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의 판결을 통한 새로운 경계획정 원칙의 소개 혹은 도입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sup>7)</sup>. 더욱이 1970년 초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이하 'EEZ')이라는 해양관할권 개념의 출현은 국제사회에 새로운 해양경계획정 원칙의 성문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해양경계획정 원칙은 1973년부터 1982년까지 진행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로 취급되었다<sup>8)</sup>. 경계획정 문제와 관련하여, 초기에는 대륙

붕 경계획정이 주된 관심사였으나, EEZ 제도의 형성으로 경계획정 문제는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제3차 해양법회의 기간 동안 각국의 대륙붕과 EEZ 획정 문제에 대한 대립은 시종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고, 결국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하 '1982년 협약') 제74조와 제83조라는 절충방안을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국제관계사에서 가장 크고 오랫동안 개최되었던 외교회의의 결과에도 불구하고<sup>9)</sup>,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규정은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인 해결방식을 제시하고 있다<sup>10)</sup>. 이는 1982년 협약 체제하에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단일의 원칙과 의무적인 적용규칙은 없으며, 여전히 국가간 협정 혹은 국제재판소의 해석과 관행 노력을 통해 형성되는 과정에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해양경계획정협상에서 연안국은 자국의 해양영토 확보를 위해 어떠한 방법과 고려요인도 주장가능하며, 이것이 최대·최적의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 기초자료 축적과 연구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한반도 주변해역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해양 지질 및 지형조사는 그 기초자료의 과학적 활용을 논의로 하고라도 주변해역의 해양경계획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982년 협약 채택 전후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관례에서 자연연장을 근간으로 한 지형 및 지질적 요인이 어떠한 법적 지위와 경계획정 요소로 고려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주변국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동시에 주변국의 지질 및 지형조사를 단순한 현재적 의미의 해양과학조사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것을 경계하고, 우리나라의 지질 및 지형조사 강화가 해양경계획정 판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일련의 질서(원칙 혹은 추세)에 따라서는 중요한 협상 원칙으로 대두될 수 있음을 함께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지질 및 지형적 요소가

<sup>1)</sup>O'Connell and Shearer(1982). p. 124-147.

<sup>2)</sup>Hollick(1981). p. 18-61 및 Appendix 1, p. 391-393.

<sup>3)</sup>트루먼 선언은 미국이 대륙붕 광물자원에 대한 주권 향유(ownership of mineral resources)를 선포하였고, 제2차 선언을 통해서 미국이 연안의 공해상에 있는 어업권을 보장할 권한이 있음(Conservation zones for protection of fisheries in certain areas of the higher seas contiguous to the US)을 선언함으로써 많은 국가의 항의를 받았다.

<sup>4)</sup>해양수산부(연구수행 : 한국해양연구원). 2002. 유엔해양법협약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분야별 전략수립 연구, p. 51.

<sup>5)</sup>1958년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2조 및 제24조, 대륙붕에 관한 협약 제6조. 1958년 제1차 해양법회의의 결과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영해 및 접속수역 협약 혹은 영해협약으로 혼용함), 공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대륙붕협약으로 혼용함),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sup>6)</sup>Jagota(1985). p. 56-57.

<sup>7)</sup>본문에서 국제관례라고 함은 국제사법재판소, 중재재판소 및 조정위원회에 의한 판결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sup>8)</sup>Jagota(1985), *op.cit.*, p. 57.

<sup>9)</sup>梁(2006). p. 2 ; Koh, Tommy and Shanmugan Jayakumar(1985).

<sup>10)</sup>1982년 협약 제74조(EEZ)와 제83조(대륙붕)는 경계획정에 관하여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국제법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형평한 해결”을 얻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양경계획정에 적용되는 근거와 과정을 경계획정 원칙의 전개과정과 연계하여 살펴보고, 해당 원칙이 국제판례에서 해석되고 적용되는 일련의 추세를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북해 대륙붕 사례와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의 경계획정원칙

해양경계획정이라 함은 다른 국가와 법적 권원(legal title)이 중첩되는 해역에 대한 연안국 관할권의 공간적 경계선을 획정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경계획정은 일방적 행위가 아닌 복수의 국가가 관련된다는 의미에서 국제적 특성을 갖는다<sup>11)</sup>. 해양경계획정 대상에 대하여는 1958년 제네바협약이 영해 경계획정<sup>12)</sup>, 접속수역 경계획정<sup>13)</sup>, 대륙붕 경계획정<sup>14)</sup> 등의 세 가지로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해와 대륙붕에 대하여는 “합의(agreement) - 등거리선(equidistance) - 특별한 사정(special circumstances)”이라는 경계획정 원칙, 그리고 접속수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언급없이 “합의 - 등거리선” 원칙에 의한 경계획정을 언급하고 있다<sup>15)</sup>. 즉, 1958년 영해협약과 대륙붕협약은 경계획정의 실질 규칙 측면에서 “등거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었다<sup>16)</sup>. 그러나 1958년의 영해와 접속수역 협약 및 대륙붕 협약은 가입 및 비준 국가수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등거리 원칙”이 체약국과 비체약국간에 적용될 수 있는지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었다. 이 과정에서 1969년 ICJ가 판결한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sup>17)</sup>는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둘러싼 전개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 본 사례는 1959년 네델란드의 Groningen 근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국가간 협의가 아닌 ICJ에 제소된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도 많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본 사례에서 서독은 대륙붕협약의 당사국이 아님을 이

유로 대륙붕협약 제6조가 규정하는 “등거리원칙(the principle of equidistance)”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sup>18)</sup>, 이 원칙이 아직 관습 국제법화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더구나 서독의 해안은 오목한 형태를 띠고 있어 등거리 원칙을 채택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sup>19)</sup>. 반대로, 덴마크와 네델란드는<sup>20)</sup> 제6조가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가지는 법적 규칙일 뿐 아니라, 서독의 오목한 해안이 특별한 사정을 구성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본 사건에서 ICJ는 두 가지 사항에 주목하였는데 첫째, ICJ는 등거리는 당사국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을 때 적용하는 편리한 경계획정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이는 협약이나 관습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명령식의 규칙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대륙붕협약 제12조는 “각국은 제6조에 대하여 유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건대, 만일 제6조가 규정하는 등거리원칙이 관습국제법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일방적으로 폐기하도록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 함 역시 이를 반증한다<sup>21)</sup>. 즉, ICJ는 “등거리원칙”은 “법 창설적”인 것이 아니며, 관습규칙으로 발전될 수 없다고 보았다. 둘째, 형평의 원칙(equitable principles)은 당사국이 당연히 존중하여야 하는 경계획정 준칙이라고 판결하였다. ICJ는 당사국은 “형평의 원칙”과 당사국 육지영토의 자연연장 원칙(the principle of natural prolongation of the land under the sea)에 의거하고, 또한 일체의 관련상황(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을 고려하여 협상을 통해 경계획정 협정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하였다<sup>22)</sup>. ICJ는 일체의 상황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계획정 방법은 없으며, 형평한 경계획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등거리 원칙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기타의 경계획정 방법의 존재 역시 대상 해역의 모든 상황에 따라 단독 혹은 혼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23)</sup>. ICJ는 경계획정 협상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당사국 해안의 일반 구조(general configuration of the coasts), 특수

<sup>11)</sup>Tanaka(2006). p. 7-8.

<sup>12)</sup>영해와 접속수역협약 제12조.

<sup>13)</sup>영해와 접속수역협약 제24조.

<sup>14)</sup>대륙붕에 관한 협약 제6조.

<sup>15)</sup>영해와 접속수역협약 제24조.

<sup>16)</sup>영해와 접속수역협약 제12조 1항. 대륙붕협약 제6조.

<sup>17)</sup>ICJ Reports(1969) ; 1969. ICJ Decision in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Federal Republic of German/Denmark, Federal Republic of German/Netherlands), *Int. Legal Mater.*, 8(2), 340-433.

<sup>18)</sup>서독은 당시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sup>19)</sup>ICJ Reports(1969), para. 20.

<sup>20)</sup>ICJ는 덴마크와 독일 그리고 네델란드와 독일의 경계획정 재결을 위한 특별협정 요구가 동일하다는 것에 근거하여 1968년 덴마크와 네델란드를 같은 이해당사국으로 하여 사안을 통합 처리하도록 하였다. ICJ Reports(1969), para. 10.

<sup>21)</sup>ICJ Reports(1969), paras. 62-63.

<sup>22)</sup>ICJ Reports(1969), paras. 84-101.

<sup>23)</sup>Ibid.

한 혹은 異常 특징(special or unusual features)의 존재, 이미 알고 있는 혹은 쉽게 증명이 가능한 관련 대륙붕의 물리적 및 지질구조(physical and geological structure) 및 그 천연자원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즉, ICJ는 해양경계획정의 일반원칙과 방법을 구분하고, “등거리”는 단지 경계획정 방법이라고 하여 관습국제법적 성질을 부인함과 동시에, 1958년 협약의 경계획정 관련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였다. 또한 자연연장원칙을 통해 일국의 대륙붕은 육지 및 도서의 해저에 대한 자연연장 부분이라고 함과 동시에, 이는 타국 영토의 해저연장 부분을 침해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sup>24)</sup>. ICJ의 판결은 미국이 1945년 트루먼 선언에서 주장하였던 “형평의 원칙”을 다시 환기한 것으로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관한 협상과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ICJ 규정에 의하면, ICJ의 판결은 단지 당사국과 해당 사안에만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sup>25)</sup>, 실제 재판소의 해석과 판결은 국제법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 판결의 영향으로, 이후 대륙붕과 EEZ의 경계획정 영역에서는 “형평의 원칙” 그룹(국가)의 입장이 강화되어 제3차 해양법회의 초기의 등거리원칙을 주장하는 국가들과 치열한 이론적 논쟁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제3차 해양법회의의 과정 중, 특히 1974년 「Main Trends」 문건에 형평의 원칙이 규정되면서, 형평의 원칙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일종의 대세적 경향을 이루게 되었다<sup>26)</sup>. 그러나 회기를 거듭해가면서도 등거리 원칙을 주장하는 그룹과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는 그룹간의 주장에 변화는 없었고, 합의점을 도출한 형태로

조문화 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4회기(1976)는 제2위원회에 협상그룹(Negotiating Groups)을 두고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포함한 “우선처리 문제”를 전달하도록 하였고, 1978년 제7회기에서는 핵심문제(hard-core issues)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7개 그룹중 제7협상그룹(Negotiation Group 7)이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다루도록 하였다. 이때, 제7협상그룹은 등거리원칙 그룹과 형평의 원칙 그룹의 주장에 근거한 전혀 다른 두 개의 경계획정 방식을 마련하였는데<sup>27)</sup>, 등거리원칙 그룹의 제안은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equidistance-special circumstance” 방법이 제기되었던 반면, 형평의 원칙그룹은 융통성(flexibility)을 강조한 case-by-case 해결 방식을 따르는 방식이었다. 즉, 등거리원칙 그룹과 형평의 원칙 그룹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법의 예측가능성인가 혹은 융통성인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양 그룹은 해양경계획정 분쟁해결에 강제적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등거리 그룹)는 주장과 강제적 사법절차에 반대(형평의 원칙 그룹)하는 것에도 이견이 있었다<sup>28)</sup>.

결국, 1980년 제9회기에서 제7협상그룹은 인접 혹은 대항 국가간의 EEZ와 대륙붕의 경계선은 모두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의로 확정한다”고 하고, 동시에 “적당할 경우 중간선 혹은 등거리선”을 채택하도록 하되<sup>29)</sup>, “관련해역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도록 제안하고 있다<sup>30)</sup>. 그러나 제7협상그룹 의장이 제안한 상기와 같은 경계획정방식은 1980년 제74조와 제84조(ICNT/Revision 2)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의 원칙 지지 그룹에게는 지나치게 중간선 원칙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에서<sup>31)</sup>, 그리고 등

<sup>24)</sup> ICJ Reports(1969), para. 85.

<sup>25)</sup>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59조.

<sup>26)</sup> Main Trends는 1974년 Caracas에서 소집된 제2회기에서 제2소위원회가 작성한 Working papers로, 해양경계획정에 관하여는 제2위원회가 토론하여 모두 16개의 제안이 제출되었다. 제2위원회 위원장은 등거리원칙과 형평의 원칙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들 제안을 해저위원회가 제기한 10개의 제안과 함께 처리하였다. Main Trends는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 EEZ의 경계획정 방식과 도서의 법적 지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Working Paper of the Second Committee, 3 UNCLOSIII OR(1975), 107-146 ; 梁熙喆, 2006. *op.cit.*, 63 p.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과정에서 제출된 「Working Papers」에는 1974년의 「Main Trends」, 1975년의 「Informal Single Negotiating Text, ISNT」, 1976년의 「Revised ISNT」, 1977년의 「Informal Composite Negotiating Text, ICNT」, 1979년의 「Revised ICNT」, 1980년의 「Informal Draft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및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등을 포함하고 있다. A/CONF.62/C2/WP.1(Oct. 14, 1974) ; A/CONF.62/WP.8. ; A/CONF.62/WP.8/Rev.1. ; A/CONF.62/WP.10 ; A/CONF.62//WP.10/Rev.1 ; A/CONF.62//WP.10/Rev.3 ; A/CONF.62//WP.10/Rev.34.

<sup>27)</sup> 제7협상그룹의 제안은 약 20여개국이 제안한 일반적 규칙으로서의 등거리 주장과 약 27개국이 제기한 형평의 원칙에 의한 합의를 근거로 한 것이다. UN Doc NG 7/2, 20 April 1978 ; UN Doc NG 7/10, 1 May 1978.

<sup>28)</sup> Adede(1987). p. 182.

<sup>29)</sup> A/CONF.62/WP.8. ; A/CONF.62/WP.8/Rev.1. ; A/CONF.62//WP.10/Rev.1. ; A/CONF.62//WP.10/Rev.34.

<sup>30)</sup> UNCLOS III, *Official Records*, Vol. XIII, 77.

<sup>31)</sup>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대표는 “중간선 혹은 등거리선을 다른 기준보다 중요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74조와 제83조 1항의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 조항의 문구(wordings) 채택을 반대하였다. UNCLOS III, *Official Records*, Vol. XIV, 37, para. 96.

거리 지지 그룹에게는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이 선언에 의해 강제절차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할 만한 답안은 아니었다. 이러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1981년 제3차 해양법회의의 제10회기 의장이던 Tommy Koh는 타협을 위한 새로운 案을 제기하였으며<sup>32)</sup>, 이 案은 약간의 수정을 통해 1982년 협약 제74조 1항과 제83조 1항으로 채택되었다<sup>33)</sup>.

1982년 협약은 중첩된 접속수역에 대하여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없이 영해 경계획정<sup>34)</sup>, EEZ 경계획정<sup>35)</sup>, 대륙붕 경계획정<sup>36)</sup>이라는 세 유형을 규정하고<sup>37)</sup>, 동시에 EEZ와 대륙붕에 대하여는 동일한 경계획정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1982년 협약이 규정하는 EEZ와 대륙붕 해양경계획정은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ICJ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라는 동일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를 통해 전개되었던 “등거리(equidistance)” 지지국가와 “형평의 원칙(equitable principles)” 지지국가 간의 절충에 의한 결과, 즉 “형평의 원칙”과 “등거리원칙”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한 방식이었다<sup>38)</sup>.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미국 대표단은 “제74조와 제83조의 경계획정 관련 조항은 기존 법률, 즉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동시에 어떠한 경계획정 방법도 우선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그 원칙의 모호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sup>39)</sup>. 현행 1982년 협약이 실제 해양경계획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은 각국이 자국에 유리한 경계획정 사례 해석과 다양한 이론

들을 적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3. 해양경계획정에서 지질 및 지형적 요소의 법적 지위

해양경계획정을 둘러싼 논리의 전개과정과 1982년 협약으로 보건대, 해양경계획정 법제의 실질적 내용은 (1) 협상을 통한 합의 달성; (2) 등거리원칙의 적용; (3) 형평의 원칙 채택; (4) 일체의 관련 상황(특별한 상황) 고려; (5) 자연연장 원칙이라는 다섯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단, 현재까지 ICJ와 그 특별재판부가 행한 7개의 해양경계획정 사례 중 5건은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등거리선 방법을 채택하였으며(전체의 71%)<sup>40)</sup>, 중재재판소와 조정위원회가 처리한 5개의 사례 중 2건이 등거리 방법을 통해<sup>41)</sup> 해결되었다. 특히,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판례는 임시 중간선을 먼저 획정한 다음, 대상 해역의 특별한 혹은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 경계선을 적절하게 이동 혹은 조정하는 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형성되고 있다<sup>42)</sup>.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재판소의 견해를 분석하던 대, 해양경계획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혹은 관련 사정은 크게 지리적 요인과 비지리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지리적 요인에는 해안선의 구조, 비례성(proportionality)<sup>43)</sup>, 섬의 존재, 기선, 지형 및 지질, 제3국의 존재, 육지경계 형태(position of land boundary)<sup>44)</sup> 등을 들 수 있으며, 비지리적 요인으로는 당사국의 행위,

<sup>32)</sup>A/CONF62/WP11 ; UNCLOS III, *Official Records*, Vol. XV, 39, para. 3.

<sup>33)</sup>Doc A/CONF 62/L78.

<sup>34)</sup>협약 제15조.

<sup>35)</sup>협약 제74조.

<sup>36)</sup>협약 제83조.

<sup>37)</sup>단, Caflisch는 접속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규정이 불분명한 것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 (1)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나 제74조/제83조의 적용 ; (2) 1958년 영해와 접속수역협약 제24조 3항의 중간선 방법 ; (3) 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가 규정하는 권능의 공동 행사 등을 들고 있다. L Caflisch, 1991. *The Delimitation of Marine Spaces between State with Opposite and Adjacent Coasts*, in R-J Dupuy and D Vignes eds., *A Handbook on the New Law of the Sea*, Nijhoff. Dordrecht, 442-445. 반면, Vukas는 영해와 접속수역과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의 영해 경계획정 규정의 적용을 주장한다. B. Vukas. 1985. *The LOS Convention and Sea Boundary Delimitation*. p. 163-164. In: *Essay on the New Law of the Sea*. ed. by B. Vukas. Sveuciliska Naklada Liber, Zagreb.

<sup>38)</sup>해양법협약 제74조 및 제83조.

<sup>39)</sup>Nandan and Rosenne(1993). p. 141.

<sup>40)</sup>1984年 <Canada-U.S. Maine Gulf Case>; 1985年 <Libya v. Malta Continental Shelf Case>; 1993年 <Jan Mayen Case>; 2001年 <Qatar v. Bahrain Case>; 2002年 <Cameroon v. Nigeria Case>. 梁(2006). *op.cit.*, p. 157.

<sup>41)</sup>1977年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Arbitration Case>; 1999年 <Eritrea-Yemen Arbitration Case>. *Ibid.*

<sup>42)</sup>梁(2006). *op.cit.*, p. 189-190.

<sup>43)</sup>해양경계획정에서 비례성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당사국간 해안선의 길이와 해역 간의 비율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말하며, 많은 해양경계획정 사례에서 논의되고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梁(2006). *op.cit.*, 173-174.

<sup>44)</sup>육지경계의 형태 문제는 해안을 인접한 국가간 경계획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며, 구체적으로는 육지경계의 끝점과 그의 방향 혹은 연장 문제와 관련되어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은 Evans(1989). p. 161.

역사적 권리, 안보요인, 항행, 환경, 경제적 요인<sup>45)</sup>, 문화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독자적인 고려 대상이면서도 때로는 그 특성상 중첩적인 성격을 갖기도 한다<sup>46)</sup>.

특히, 지질 및 지형적 요소는<sup>47)</sup> 1940년대 이후 해양경계 획정 판례와 학설을 통해 지속적인 주목을 받아왔던 문제로서, 1945년 미국이 자국 연안에 인접한 대륙붕 자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한 자연연장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트루먼 선언은 “대륙붕은 연안국 육지의 해저로의 연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지의 한 부분이며, 연안국의 대륙붕 해저와 하층토에 대한 관할권 행사는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보았다<sup>48)</sup>. 따라서, 미국이 제기한 “자연연장” 원칙은 자연적 사실을 기초한, 즉 대륙붕은 육지의 해저로의 자연연장이며, 수중 대륙붕과 대륙은 형태상 그리고 지질상 단일체를 구성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트루먼 선언 이후, 자연연장 원칙은 연안국의 대륙붕 권리행사를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되어 왔으나, 자연연장의 대륙붕과 해양경계 획정에서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의견 대립이 있어 왔다.

### 1982년 협약 채택 이전의 판례

1958년 대륙붕협약은 대륙붕에 대하여 “깊이”와 “개발 가능성”을 기준으로 채택함으로써 자연적 연장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고는 평가되나, 대륙붕과 자연적 연장의 관계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의한 것은 1969년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에서였다. ICJ는 본 사례에서 “대륙붕은 일국 육지의 해양과 해저로의 자연연장이며, 대륙붕 경계는 일국의 대륙붕 지역에 대한 귀속을 확인하는 것이지 해당 지역을 분배하거나 중첩지역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따라서, 경계 획정은 각 당사국이 가능한 한 연안국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인 모든 부분을 획득하는 것이며, 또한 타국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을 침해하

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sup>49)</sup>. 이 판결은 비록 자연연장의 개념이 자동적으로 대륙붕 경계를 확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지만, 연안국에게는 국제재판소로 하여금 해저의 지질 및 지형적 형태에 근거하여 대륙붕 경계를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1977년 <Anglo-French Continental Case>에서 중재재판소는 당사국이 공동의 대륙붕을 가진 국가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분쟁이 있는 대륙붕은 양국 육지에 대한 공동의 자연 연장이며, 양국은 공동의 자연연장을 구성하는 대륙붕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 근거를 갖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sup>50)</sup>. 즉, 1977년 중재재판소는 1969년 ICJ의 입장에 대하여 자연적 연장이라는 역할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51)</sup>. 중재재판소는 영국이 제기한 Hurd Deep와 Hurd Deep Fault Zone의 축선(axis)에 의한 경계선 주장에 대하여 “지질적 단층(faults)은 대륙붕의 지형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고려될 수는 있으나, Channel이나 Atlantic region에서 대륙붕의 본질적인 통일성을 단절하지 않는 정도의 해저와 하층토에서의 단절일 뿐이다”라고 하고, 또한 이는 1969년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의 Norwegian Trough와 비교하여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것과 이러한 특징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국가관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영국의 주장을 기각 하였다<sup>52)</sup>.

1982년 <Tunisia v. Libya Case>에서<sup>53)</sup>, 당사국들은 1969년 판례를 기초로 경계 획정은 자연적 연장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연적 연장 방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량의 지질 및 지형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ICJ는 1969년 판결이 결코 “형평한 경계 획정과 자연연장의 한계를 확정하는 것이 동의어라고 간주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모든 혹은 대다수의 사례에서 당사국 영토의 자연연장 간의 한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는 잘못된

<sup>45)</sup>경제적 요인은 (1) 엄격한 의미의 경제적 요인에 속하는 석유와 가스 및 어업과 같은 자연자원의 존재, (2) 국가의 자연자원 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와 국가의 경제정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말한다. 그러나 당사국간의 경제적 부의 차이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요인은 국제사례에서 지속적으로 부정되어 왔다. *Maine Gulf case*에서 특별재판부는 지나친 불공정 결과를 야기하는지를 테스트 하는 부차적 역할(secondary role in testing)로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였다. *ICJ Reports*(1984), para. 232 ; paras. 237-241.

<sup>46)</sup>예를 들어, 당사국의 행위라는 것은 어업과 기타 자원에 대한 탐사개발과 같이 주로 경제적 활동에 관계되므로, 경제적 요인과 당사국의 행위는 자주 중첩된다. 경제적 요인은 또한 역사적 권리와 관련되기도 한다.

<sup>47)</sup>엄격하게 말하면, 지질학과 지형학은 다른 개념이다. 전자가 해저의 구조와 구성에 관련된다면, 후자는 해저의 형성과 형태를 말한다. 단,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para. 170), *Libya/Malta case*(*ICJ reports*(1985), para. 38) 등의 판례에서와 같이 양자의 개념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고 사용된다.

<sup>48)</sup>北京大學法律系國際法教研室編(1974). p. 301.

<sup>49)</sup>*ICJ Reports*(1969), para. 85.

<sup>50)</sup>UN,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XVIII(1977), para. 79.

<sup>51)</sup>梁(2006). *op.cit.*, p. 185.

<sup>52)</sup>UN,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XVIII(1977), para. 107.

<sup>53)</sup>ICJ, *Case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Continental Shelf Between Tunisia and Libya*, Judgement of 24 Feb. 1982.

것”임을 강조하였다<sup>54</sup>). 즉, ICJ는 자연연장 원칙이 연안국 대륙붕 권리의 근거이자 법적 기초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관련 당사국이 동일한 대륙붕을 향유하는 경우에 자연연장은 경계확정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sup>55</sup>). ICJ는 본 사례에서 지형적 요인이 본 사례에 적용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시하고, 비록 어떠한 상황에서 자연연장이 당연히 연안국의 대륙붕 범위를 확장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일반적 의미에서 지형적 요소는 여전히 관련 상황(relevant circumstance)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sup>56</sup>). 즉, 대륙붕 권리에 대한 근거로서의 자연연장과 대륙붕 경계확정의 원칙으로서의 자연연장을 구별하고, 그 후자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 1982년 협약 채택 이후의 판례

1984년 <Gulf of Maine Case>에서<sup>57</sup>), 미국은 지형적 요인에 근거하여 대륙붕에서 상부수역까지 확장된 경계확정을 시도하였다. 미국은 경계확정 지역의 서부수역에는 3개의 다른 생태권이 존재하며, Northeast Channel이 이러한 자연연장의 중단을 이루는 자연적 경계선이라고 주장하였으나<sup>58</sup>), ICJ 특별재판부는 이를 기각하였다. 재판소는 “불안정한 해역과 그 동식물 환경에서는 어떠한 정확하고 안정적인 자연적 경계선을 확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sup>59</sup>), 단일 경계선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단지 해저와 관련되는 지질학적 형태가 고려될 수는 없음을 지적하였다<sup>60</sup>).

지형 및 지질적 요인이 해양경계확정에서 어떠한 역할(혹은 법적 지위)을 갖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일정 범위내의 역할을 부정한 것은 1985년 <Libya v. Malta Case><sup>61</sup>)였다. 해당 사례에서 ICJ는 물리적 의미의 자연연장 개념에 근거한 ‘rift zone’을 주장한 리비아의 견해를 부정하면서, “법은 연안국의 해저와 하층토의 지질

적 특징에 관계없이, 해안으로부터 200해리의 대륙붕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으며, 그 거리 내에서는 당사국의 법적 권리나 경계확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질 혹은 지구물리학적(geological or geophysical factors) 요인에 어떤 역할을 부여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sup>62</sup>). 동시에 “과거 1969년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와 1982년 <Tunisia v. Libya Case>가 지질을 중요한 고려요소로 보았으나, 이는 당시 대륙붕 경계확정에서 자연연장을 대륙붕 권리의 법적 기초”로 보았기 때문이며, 그 현재적 지위는 “해안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미 과거형이다(now belongs to the past, in so far as sea-bed areas less than 200 miles from the coast are concerned)”고 판결하고 있다<sup>63</sup>). ICJ의 이러한 판결은 1982년 협약 제76조가 규정하는 200해리 거리원칙이 대륙붕 주장의 법적 근거로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질 및 지형적 상황은 이러한 대륙붕 경계확정에서 효력이 없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주의할 만한 것은, 경계확정과 관련하여 ICJ가 지질 및 지형적 요인의 관련성 배제 이유를 1982년과 1984년 사례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면서도, 왜 1985년 사례에 와서야 그 적용한계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생각건대,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1982년 사례를 심리할 때에는 아직 1982년 협약이 통과되지 않았을 시기로, ICJ가 초안을 참고하였으리라는 점과 양 당사국이 모두 자연연장 원칙만을 제기하였으므로<sup>64</sup>) ICJ가 거리기준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1984년 사례에서도 ICJ 특별재판부의 임무는 대륙붕에 한정된 경계확정이 아닌 대륙붕과 상부 어업수역에 대한 단일경계선 확정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자연연장 원칙을 강조하거나 구체적 해석을 가할 이유 역시 없었다<sup>65</sup>).

<sup>54</sup>) ICJ reports(1982), para. 44.

<sup>55</sup>)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연장 원칙은 (1) 권리의 근거와 기초가 된다는 점, (2) 경계확정의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전자는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으나, 후자는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본 사례에서 ICJ는 후자를 택했음을 알 수 있다.

<sup>56</sup>) ICJ reports(1982), para. 68, 80.

<sup>57</sup>) ICJ,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Judgement of 12 Oct. 1984.

<sup>58</sup>) ICJ Reports(1984), para. 51.

<sup>59</sup>) ICJ Reports(1984), para. 54.

<sup>60</sup>) 미국과 캐나다의 ICJ에 본 사건을 부탁할 때, 단일 경계선으로 대륙붕과 어업수역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재판소가 각하한 것은 미국의 주장은 대륙붕과 어업수역을 단일선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 역시 이유가 되었다. ICJ Reports(1984), para. 193.

<sup>61</sup>) ICJ, Case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Libyan Arab Jamahiriya/Malta), Judgement of 3 June 1985.

<sup>62</sup>) ICJ Reports(1985), para. 39.

<sup>63</sup>) ICJ Reports(1985), para. 40.

<sup>64</sup>) ICJ reports(1982), para. 48.

<sup>65</sup>) Gulf of Maine Case 외에 Guinea v. Guinea-Bissau Case, Greenland v. Jan Mayen Case, Eritrea v. Yemen Case, Qatar v. Bahrain Cases 등의 단일 경계확정 사례에서도 지질 및 지형적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다.

둘째, 1985년 사례에서 리비아가 제기한 'rift zone'의 존재가 선행 사례에서 제기된 지질 및 지형적 요인과 비교할 때 훨씬 중요하고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다<sup>66</sup>). 'rift zone'의 존재를 주장한 리비아의 입장에서는 ICJ가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에서 자연연장의 중단효과로 인정했던 깊이 235~650미터, 길이 43해리, 폭 30~70해리의 Norwegian Trough와 비교할 때 보다 분명한 특징을 갖는 것임은 틀림없다. 리비아의 주장대로 경계선이 단층지대에 위치하였다면, 리비아와 말타가 획득하는 해역면적은 약 12:1의 비율로 나누게 될 것이었다<sup>67</sup>). 본 사례에서 설령 'rift zone'이 근본적인 중단 작용을 하지 못한다고 부정되었으나, ICJ의 1982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그 존재는 여전히 경계획정에 관한 관련 상황으로 고려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ICJ가 1985년 대륙붕 경계획정 사례에서 지질 및 지형적 요소를 배제한 것이 이러한 원인에 기인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ICJ는 EEZ 제도의 대륙붕개념에 대한 영향과 1982년 협약 제76조 대륙붕 개념에 대한 법적 발전으로 이미 대륙붕은 복잡한 법률개념이 되었으며, 자연연장과 거리개념이 모두 대륙붕 법률 개념의 중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거리기준이 대륙붕과 EEZ에 동시에 적용된다는 재판소의 견해가 자연연장의 개념이 이미 거리개념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ICJ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자연연장과 거리개념은 반대적인 것이 아닌 상호 보충적인 개념이며<sup>68</sup>), 200해리 외측 해역에 대하여는 여전히 자연연장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양자의 개념과 적용상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다른 해석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1982년 협약 제76조가 규정하는 대륙붕은 자연연장으로서의 대륙붕과 법적 의미에서 거리원칙 개념으로서의 대륙붕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자를 우선적인 개념으로 그리고 후자를 보조적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2년 협약과 ICJ

견해에 따르면, 거리원칙에 따라 연안국 대륙붕계의 외연이 200해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00해리 거리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자연연장원칙은 200해리 내외연에 대한 대륙붕 권리 근거로서 여전히 전자보다 해석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연장이라는 것은 대륙붕개념에 대한 시종적(始終的) 기준이자 대륙붕 권리가 "사실 자체 그리고 처음부터(*ipso facto and ab initio*)" 존재<sup>69</sup>)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구체화한 것이며, 이점은 EEZ 권리와 분명히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sup>70</sup>). 국내에서는 권문상 박사가 <Libya v. Malta Case>에 대하여 "재판부는 육지의 자연연장원칙의 엄격한 적용의 결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을 다소 완화시키기 위하여 1982년 협약상 육지의 자연적 연장원칙의 보충적 기준으로서 규정된 거리기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원칙과 例外를 혼동하여 거리기준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여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71</sup>). 1982년 사례에서 ICJ가 "이 정의는 두 부분에서 다른 기준을 사용하였다. 제1항의 첫 번째 부분에 따른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원칙이 주된 기준이고, 두 번째 200해리라는 거리는 특정 상황에서 연안국 주권의 기초가 된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있다<sup>72</sup>). ICJ의 이러한 태도는 자연연장 원칙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만, 거리라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임을 견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982년 협약의 관련 조항 자체가 대륙붕제도와 EEZ 제도 및 양자간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2년 협약 제56조 3항은 "해저 및 하층토에 관하여 본조에 규정된 권리는 제6장(대륙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륙붕 권리와 EEZ 권리가 중첩될 경우 그 중첩부분에 대하여는 대륙붕제도가 이를 대체(혹은 적용) 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자연연장 개념은 여전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현재까지 국제재판소에 부딪된 대륙

<sup>66</sup> 해당 지역은 3개의 해조와 2개의 해구를 포함하고 있다. 그중 3개의 해구는 서북에서 동남쪽 방향으로 수심이 약 1,000미터 이상에 해당된다. Malta Trough의 수심은 약 1,715미터, 폭은 약 11해리, 길이는 약 87해리의 해구로서 주위 수심은 534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수역이다. Pantelleria Trough는 가장 깊은 수심이 약 1,314미터이고 폭은 약 15해리, 길이는 약 52해리이며 주위 수심은 230미터 이하의 수역이다. Linosa Trough의 가장 깊은 곳은 1,615미터이며 폭이 8해리 길이는 약 41해리에 달하고, 주위 수심은 600미터 이하의 해역이다. 이들 해구의 동쪽에는 두 개의 방향이 대체로 일치하는 비교적 얕은 해구가 있는데, Malta Channel과 Medina Channel이 그것이다. 이들 수역의 수심 역시 500미터 이상에 달한다.

<sup>67</sup> 리비아와 말타간 해안선 길이 비율은 약 8:1이었으나, 실제 대륙붕 경계획정으로 인한 해역 취득 비율은 3.8:1에 달하였고, ICJ는 이러한 비율이 비례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sup>68</sup> ICJ Reports(1985), para. 34.

<sup>69</sup> ICJ Reports(1969), para. 19.

<sup>70</sup> 권리취득이라는 측면에서 대륙붕은 연안국의 주장없어도 취득할 수 있는 원래의 권리이지만, 연안국의 EEZ에 대한 취득은 반드시 명시적인 주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sup>71</sup> 권(1989). p. 199.

<sup>72</sup> ICJ Reports(1982), para. 47.

봉경계획정 사례에서 명백하고 쉽게 자연연장 중단을 확인할 만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은, 향후 경계획정 구역의 조건과 경계획정 판례의 추세에 따라 자연연장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 국가간 합의에 의한 해양경계획정에서의 지형 및 지질적 요인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사례와 마찬가지로,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다수의 국가간 협정에서도 지질 및 지형적 특징은 특별한 사정(관련상황)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자연연장 원칙이 대륙붕에 관한 가장 기본적 규칙임을 선언한 1969년 ICJ 판결에 따라 체결한 삼국간 협정<sup>73)</sup>에서도 당사국은 폭 약 20해리, 깊이 700미터인 노르웨이 해구의 존재를 무시하고 중간선에 따라 획정하였으며, 1977년 그리스와 이태리간 협정에서도 약 800~4,000 m 깊이인 Ionian 심해 평지의 존재 역시 경계획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sup>74)</sup>. 1971년의 이태리와 튀니지간 협정<sup>75)</sup>, 1974년의 이태리와 스페인 협정<sup>76)</sup>, 1974년의 프랑스와 스페인 협정<sup>77)</sup>, 1978년의 인도와 태국간 협정<sup>78)</sup>

역시 지질 및 지형적 요인이 무시되거나 등거리선에 기초한 대륙붕 경계가 획정된 사례들이다<sup>79)</sup>.

반대로 1972년 호주와 인도네시아간 협정<sup>80)</sup>에서는 수십 약 3,100 m인 Timor 해구와 Arafura Seas에서의 대륙붕 경계획정이 문제가 되었는데, 협상결과 양국의 대륙붕 경계선은 Timor 해구의 영향으로 양국 가상 중간선에서 훨씬 인도네시아측에 가깝게 형성되었다<sup>81)</sup>. 본 사례에서 호주가 약 80%의 수역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은 1969년 사례에서 ICJ가 서독 입장을 지지한 것이 직접적 원인임은 의심할 여지없다<sup>82)</sup>.

1988년 영국과 아일랜드간 협정에서는<sup>83)</sup> 두 지역에 대하여 두 개의 대륙붕 경계선이 설정되었는데, 두 경계선의 끝점(terminal points)이 1982년 협약 제76조가 규정한 지형 및 지질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양국은 해당 수역이 공유대륙붕을 갖는다는 것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지질 및 지형적 요인이 두 대륙붕 선인 Line A와 Line B에<sup>84)</sup> 적용할 여지는 없었다. 단, 경계점 제94번은 slope foot에 60해리를 추가한 기준으로 설정되었고, 제132번은 등심선 2,500 m에 100해리를 추가하여 설정한 것으로

<sup>73)</sup> 1965년 덴마크와 노르웨이, 1968년 노르웨이와 스웨덴, 1965년과 1978년의 영국과 노르웨이간 대륙붕협정.

<sup>74)</sup> Agreement between the Hellenic Republic and the Italian Republic on the Delimitation of the Zones of the Continental Shelf Belonging to Each of the Two States. p. 1594-1595. In: Charney and Alexander(1993).

<sup>75)</sup>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and the Government of the Tunisian Republic Relating to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the Two Countries(1971). p. 1611-1619. In: Charney and Alexander(1993). *op.cit.* 수정된 등거리선이 적용되었다.

<sup>76)</sup> Agreement between Italy and Spain Relating to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the Two Countries(1974). p. 1601-1605. In: Charney and Alexander(1993). *op.cit.*, No. 1, Vol. II.

<sup>77)</sup> 양국은 Q와 Q1 지점간의 경계에 대하여는 Cape Breton 해구와 지형적 요소를 무시한 거의 직각으로 경계획정에 동의하였으며,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하여는 4500미터 등심선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Convention between France and Spain (1)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the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nd (2)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Bay of Biscay(1974), p. 1719-1725. In: Charney and Alexander(1993). *op.cit.*, No. 2, Vol. II.

<sup>78)</sup> 해당 수역에는 4,000 m까지 경사진 Andaman basin 축이 태국보다는 인도의 Andaman과 Nocobar섬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었다.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e Thailand on the Delimitation of Seabed Boundary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Andaman Sea(1978), p. 1433-1438. In: Charney and Alexander(1993). *op.cit.*, No. 1, Vol. II.

<sup>79)</sup> 1974년 프랑스와 스페인 사례에서 대륙붕 관련 지역은 등거리선(연안에서부터 100해리까지)과 관련 해역의 해안선 길이 및 대륙붕 해역에 대한 비례(proportionality)를 통해 획정하였다.

<sup>80)</sup>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Establishing Certain Seabed Boundaries in the Area of the Timor and Arafura Seas Supplementary to the Agreement of 18 May 1971. p. 1207-1218. In: Charney and Alexander(1993). *op.cit.*, No. 1, Vol. II.

<sup>81)</sup> Charney and Alexander(1993). *op.cit.*, No. 1, Vol. II, 1211 p.

<sup>82)</sup> 1978년 포르투갈 영토였던 동 Timor가 인도네시아에 귀속되자 양국은 재차 누락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대륙붕경계협상을 재개하였으며, 1989년 대륙붕 경계획정은 유보한 채 공동개발 수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Treaty Between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 on the zone of Cooperation in an Area between the Indonesian Province of East Timor and Northern Australia(1989). p. 1245-1328. In: Charney and Alexander(1993). *op.cit.*, No. 1, Vol. II.

<sup>83)</sup>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Ireland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the Two Countries(1988). p. 1767-1779. In: Charney and Alexander(1993). *op.cit.*, Vol. II.

<sup>84)</sup> 양국은 502마일의 Line A(1-94번점) 경계선과 634마일의 Line B(95-132번점) 경계선을 획정하였는데, 각각 다른 기준과 방법이 적용되었다.

로 보아<sup>85)</sup> 1982년 협약 제76조가 고려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대륙붕 관련 협정과는 달리, 단일 경계선으로 해양경계 획정을 이루어야 할 경우 지형 및 지질적 요인의 역할은 보다 분명하게 약화된다. 1977년 쿠바와 아이티간 경계협정에서는<sup>86)</sup> 약 2,900 m 깊이의 Cayman Trench의 존재가 무시되었으며, 1978년 도미니카공화국과 콜롬비아 협정에서는<sup>87)</sup> 동부와 서부를 분명하게 분리하는 Beata Ridge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sup>88)</sup>. 1980년 프랑스와 베네주엘라는 지형 및 지질적 요인을 고려하여 경계획정을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구체적인 협상과정에서는 경계획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형태로 체결되었다<sup>89)</sup>.

지형 및 지질적 요인이 경계획정에 영향을 끼친 국가간 협정으로는 1982년 프랑스(Kerguelen Islands)와 호주(Heard와 McDonald Island)간 단일경계선 협정<sup>90)</sup>, 1990년 체결된 Trinidad와 Tobago 및 Venezuela 협정<sup>91)</sup>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 협정에서 지형 및 지질적 요인은 경계선의 끝점을 결정하는데 적용되었거나 고려되었다<sup>92)</sup>.

#### 지형·지질적 요소의 국제판례와 국가간 협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해석

지형 및 지질적 요인의 해양경계획정에서의 역할을 국제판례와 국가간 협정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제판례에서 지형 및 지질적 요인의 해양경계 획정에서의 역할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재판소에 부탁된 기존의 사례가 해저를 고려할 만큼 중

대한 특징이 없었다거나, 해저가 연속적이거나 혹은 중단이 없을 때 지형 및 지질적 요인은 경계획정과 실질적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로 현행 국제해양법에서 연안국은 해당 수역의 지질 혹은 지형적 특징에 관계없이 대륙붕과 200해리 EEZ/EF의 주장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ICJ가<Libya v. Malta Case>에서 지질 및 지형적 요인은 해양경계획정 과정과는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근거이기도 하다. 사실상 200해리 이내의 수역에서 해저의 특징에 대한 고려는 법적 권원으로서의 거리기준(distance criterion as legal title)과 상충되며, 이는 학자들에 의해 지질 및 지형적 요인이 해당 수역의 분명한 특징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요소로 고려될 수 없다고 주장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sup>93)</sup>. 더욱이, 단일 경계획정에서 적용되는 불명확한 기준(neutral criteria)과<sup>94)</sup> 기하학적 방법(geometrical methods)의 적용은 지질 및 지형적 요인과 해양경계획정과의 관련성을 보다 약화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비록 해양경계획정에서 지형 및 지질적 요인이 고려된 사례는 있으나, 다수의 국가간 협정에서 해저의 특징은 해양경계선의 위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설령 그러한 요소가 고려될지라도, 이는 경계의 끝점을 확정하거나 경제적 및 항행 이익 등의 다른 요인들과 함께 고려되는 이차적인 역할(secondary role)로 고려되고 있다<sup>95)</sup>. 국가간 협정에서 지형 및 지질적 요인이 무시되거나 혹은 부차적 요소로 고려되는 것은 먼저 해저의 지구물리학적 성질을 규명하기 위한 과학적

<sup>85)</sup>Charney and Alexander(1993). *op.cit.*, No. 2, Vol. II, p. 1770.

<sup>86)</sup>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Haiti and the Republic of Cuba Regarding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between the Two States(1977), Charney and Alexander. 1993. *op.cit.*, No. 2, Vol. I, p. 551-563.

<sup>87)</sup>Agreement on the Delimitation of Marine and Submarine Areas and Maritime Cooperation between the Dominican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Colombia(1979), Charney and Alexander. 1993. *op.cit.*, No. 1, Vol. I. p. 477-490.

<sup>88)</sup>*Ibid.*, p. 482.

<sup>89)</sup>Delimitation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Venezuela and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1980), Charney and Alexander. 1993. *op.cit.*, No. 2, Vol. I, 603-614.

<sup>90)</sup>Agreement on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nd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1982). p. 1185-1194. In: Charney and Alexander(1993). *op.cit.*, No. 1, Vol. II.

<sup>91)</sup>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Trinidad and Tobago and the Republic of Venezuela on the Delimitation of Marine and Submarine Areas(1990). p. 675-689. In: Charney and Alexander(1993). *op.cit.*, No. 2, Vol. I.

<sup>92)</sup>Tanaka(2006). *op.cit.*, p. 237-238.

<sup>93)</sup>Kolb(2003). p. 331-333. 그러나 Evans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Evans(1989). p. 115-117.

<sup>94)</sup>본문에서 “불명확한 기준”이라 함은 EEZ와 어업수역 및 대륙붕이 경계가 함께 논의될 때, 이는 대륙붕이나 EEZ 같은 어느 특정한 경계선 획정을 위한 요소의 고려가 아닌 양자를 모두 포괄 및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경계선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제시되는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즉, ‘불명확한’이라는 것의 강조가 아닌, 단순히 단일 경계선 획정시 적용되는 기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sup>95)</sup>Hight는 1993년을 기준으로 약 32-36%의 경계획정이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K Hight, “The Use of Geophysical Factors in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in Charney and Alexander. 1993. *op.cit.*, 195 p.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sup>96)</sup>. 또 다른 이유는 해저의 특징에 기초한 경계선을 확정하는 실행상에서의 어려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저의 자연적 불연속성은 일반적으로 선(line)이 아닌 지역(zone)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1985년 <Libya v. Malta Case>의 사례에서도 리비아는 rift zone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점에 주목한 바 있다<sup>97)</sup>.

ICJ는 1969년 사례를 통해 자연연장을 해양경계획정의 중요한 원칙으로 보았고, 1982년 사례에서는 이를 경계획정에 적용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다만 적당한 경우 이를 관련 상황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또한 1985년 사례에서는 “지질 혹은 지구물리적 요인에 어떠한 역할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함으로써<sup>98)</sup>, 해양경계획정에서 지질 및 지형적 요인의 지위 혹은 역할이 매우 약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국제중재재판소는 1985년 <Guinea v. Guinea-Bissau Case>를 통해 “대륙붕 단절이 있을 때만이 자연연장 규칙의 인용이 유효”한 것이며, “대륙붕이 연속적일 경우, 현행 국제법에 따라 어떠한 특징도 자연연장 원칙을 지지하는데 인용될 수 없으며, 또한 자연적 경계를 확정하는 근거로 제기될 수 없다”고<sup>99)</sup> 함으로써 상술한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소의 입장은 바로 1969년, 1977년, 1982년, 1984년, 1985년 <Guinea v. Guinea-Bissau Case>와 <Libya v. Malta Case>가 직면한 난제이기도 하였다. 비록 ICJ가 1982 사례에서 “지형적 특징이 관련 당사국간의 자연연장을 중단하지는 않았을 지라도 여전히 관련 상황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여전히 경계획정 지역에 단일 대륙붕이 존재하는지는 명확한 회답이 요구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일 단일 대륙붕이 존재한다면, 이는 관련 당사국이 그 영토의 자연연장으로써 국제법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대륙붕 전부를 주장할 수 있게 될 수 있는지, 혹은 이러한 특징은 어떠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판소는 거리라는 현행 1982년 협약상의 기준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렇다면 상술한 일련의 추세, 즉 지형 및 지질적 요인은 해양경계획정이라는 영역에서 그 지위가 약화되고 있

다는 견해가 향후 대륙붕경계획정에서 지속적인 하나의 원칙이나 규칙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비록 대륙붕에 대한 권리 근거가 이미 자연적 연장 원칙이라는 유일 근거에서 자연연장과 거리기준이라는 것으로 전환되었으나, 자연연장 원칙은 여전히 연안국 권리 근거 중의 하나이다. 자연연장의 단절이 있는지 혹은 자연연장의 한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질 및 지형적 고려가 요구된다. 일단 자연연장의 중단이 있다고 증명될 경우, 관련 당사국간의 대륙붕경계획정은 등거리가 확립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게 되며, 경계획정에서의 특별한 사정으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리라 본다.

#### 4. 결론 : 대응방안

상술한 바와 같이, 해양경계획정에서 주변해역을 둘러싼 지형 및 지질적 요인이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가의 문제는 국제판례와 국가간 협정에서 지속적인 논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해양경계획정 원칙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추세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황해에서 중국과 공유대륙붕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중간선을 주장하고 있으며, 동중국해에서는 오키나와 해구가 양국간 대륙붕의 자연적 단절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경계획정을 주장하고 있다. 상기 분석한 판례는 중간선을 주장한 일본측의 입장을 강화시키고 육지의 자연적 연장을 주장한 중국 입장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우리는 황해에서는 유리하겠으나 동중국해에서는 불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sup>100)</sup>.

그러나, 이는 당사국간 적용을 의무화 하는 ‘원칙’이 아닌, 형성 과정에 있는 ‘추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즉, 향후 국제재판소와 국가간 협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다르게 전개되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1972년 호주와 인도네시아간 협정에서는 1969년 ICJ 판례를 통해 제기된 자연연장원칙이 중요한 고려요소로 적용되어 약 80%의 대상 해역이 호주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1989년 Timor의 누락된 해역에 대하여 체결된 양국간 협정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형성된 지질학적 요소와 경계획정의 관련성 감소 추세가 그대로 반영되어 체결되었다. 즉, 양국이 설정한 공동수역은 이전의 양상과는 달리 호주쪽으

<sup>96)</sup> 예를 들어, 프랑스와 베네주엘라가 단일경계선 협정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고려요소에서 배제하였다.

<sup>97)</sup> ICJ Reports(1985), para. 38.

<sup>98)</sup> Charney and Alexander(1993). p. 907-908.

<sup>99)</sup> Guinea v. Guinea-Bissau Case(1985), paras. 116-117. 혹은 77 International Law reports(1988) 참조.

<sup>100)</sup> 국제판례에서의 자연연장론 후퇴 입장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백진현 교수는 수용입장, 이석용 교수는 인정하되 지형적 특징은 여전히 관련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생각된다. 백진현. 1991. 해양경계획정원칙의 변천과 한반도 주변해역의 경계문제. *해양정책연구*, 6(1), p. 34, 39. ; 이석용. 1989.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고찰-황동지나해를 중심으로. *해양정책연구*, 4(1), p. 20.

로 상당 부분 이동하여 형성되었으며, 공동개발 수역의 남쪽은 인도네시아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선으로 설정되었다<sup>101)</sup>. 이는 해양경계획정 협정이 고정된 원칙이 아닌 새로운 해석과 적용 원칙의 변화에 따른 유동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4년 체결된 한일간 남부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역시 1969년 북해대륙붕 사례를 전후로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이 반영되어 체결된 예이다<sup>102)</sup>. 이들 두 사례는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연안국간의 논리 개발과 국제사례와의 연계를 통한 자국 논리 정당성 확보 노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와 해양경계를 획정하여야 하는 중국과 일본 역시 이미 다년간의 투자와 조사로 주변해역의 지질 및 지형, 자원분포도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는 양안간 400해리 미만해역에서 경제성 자원이 분포된 최적의 해양관할권 확보 전략을 위한 자료이나,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해역에 대한 해양정보 통제권 강화와 해양력 확장을 위한 전략적 시도로 이해하여야 한다. 더구나 일본이 중국 및 우리나라와는 도서 영유권이라는 난제를 동반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와 지질 및 지형 혹은 해안선이라는 지리적 요인 이외에 해양경계획정 협상 과정에서 논의 될 만한 특별한 사정(혹은 관련 상황)이 제한적인 중국까지<sup>103)</sup> 광범위한 주변 해역의 지질/지형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경계획정과 해양력 강화라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중일 삼국은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에서 오끼나와 해구의 성질을 둘러싸고 대립 혹은 전략적 제휴를 이루어야 하는 관계에 있다. 만일 오끼나와 해구의 존재가 양국간 자연연장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상 해역의 중요한 관련상황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의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오끼나와 해구가 우리가 주장하는 자연적 단절이든 혹은 일본이 주장하는 일시적 침강이든 여전히 한일간 해양경계획정에서 무시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며, 1974년 양국간 남부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생

각된다<sup>104)</sup>.

황해 경계획정에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으나 일부 학자들은 황해 해저의 퇴적물(sedimentation)의 근원 및 분포도가 경계획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sup>105)</sup>. 이 주장은 1982년 협약 제76조가 해저의 퇴적물 두께를 대륙붕 외측한계의 결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sup>106)</sup>, 이는 과거 자연연장이 대륙붕 경계획정의 대원칙이었을 때에도 지질·지형적 요인이 자연연장을 차단시킬 수 있다는 정도로 해석되었을 뿐, 해저 및 하층토의 지질적 형성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음을 간과하는 것이다<sup>107)</sup>. 황해에서는 도서 해안선을 포함한 대상해역의 해안선 길이가 고려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설정하는 등거리선을 변경 혹은 수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황해라는 특정 해역만을 중심으로 거론하였을 때 가능한 설정이며, 중국의 동중국해 분쟁해결 방식 혹은 전개방향에 따라서는 황해에서의 지형 및 지질적 요인 등의 기타 요인이 제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황해에 대한 지질 및 지형적 요인 등에 대한 데이터 축적은 경계획정과 연계 가능성 문제를 논외로 하고라도, 황해 전체의 해양환경변화와 해양정보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 수집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국제해양경계획정 문제에 관한 국제판례와 국가간 합의에 의한 협정은 고정된 규칙이나 원칙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는 바,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연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형 및 지질적 요인은 국제판례 및 국가간 해양경계획정에서의 환경변화와 자료의 명확성 그리고 국제해양질서의 새로운 패턴을 통해서는 여전히 그 주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서 지속적 투자를 통한 데이터 축적과 연구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황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이 각각 의도하고 있는 자원확보와 장기적 경계획정 전략을 위해 관련 문제에 대한 의외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에

<sup>101)</sup>Treaty Between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 on the zone of Cooperation in an Area between the Indonesian Province of East Timor and Northern Australia(1989). Charney and Alexander(1993). *op.cit.*, No. 1, Vol. II, p. 1251.

<sup>102)</sup>당시 우리나라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정시 제7광구를 제외한 6개 광구만을 설정하고 일본과는 중간선에 따라 획정할 계획이었으나, 1969년 북해대륙붕 사례의 영향으로 일본의 입장이 대폭 약화된 형태로 체결되었다. *Seikyu Shunju, March*. 1974, 3 p.

<sup>103)</sup>일본의 경우 중국과는 조어대(센카쿠제도), 우리나라와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라는 난제를 동반하고 있으며, 당사국간 관련 해역의 경계획정은 이들 도서주권 해결이 절대적인 선결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sup>104)</sup>대만의 馬英九 박사 역시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馬(1986). p. 78.

<sup>105)</sup>Hsu(1983); 袁(2001). p. 82.

<sup>106)</sup>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4항 (a)(i)는 연안국이 대륙변계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퇴적암의 두께가 최소한 1%인 가장 바깥 고정점으로부터 대륙사면의 끝까지를 연결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최소한 1%인 가장 바깥 고정점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sup>107)</sup>백진현. 1991. *op.cit.*, p. 42-43.

유의하고, 우리의 권리 확보를 위하여 관련 국가에 대한 지속적 견제와 의견 개진이 동반되어야 한다. 동시에, 자원개발을 둘러싼 외교 혹은 구체적 개발활동에서 나타나는 고도의 전략적 문제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대상해역별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황해와 동중국해 및 남해 등을 중심으로 자원의 분포상황과 전략적 요소 등의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 협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 사 사

이 논문은 “황해 퇴적물 이동현상 및 퇴적환경 연구 (PM38900)”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본 논문을 세밀하게 심사하고 좋은 의견을 주신 심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참고문헌

- 권문상. 1989.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65 p.
- 馬英九. 1986. 從新海洋法論釣魚臺列嶼與東海劃界問題. 中正書局, 台北. 266 p.
- 北京大學法律系國際法教研室編. 1974. 海洋法資料匯編. 北京, 人民出版社. 547 p.
- 梁熙喆. 2006. 從國際海洋劃界原則和實踐論中國EEZ與大陸架劃界問題. 法學博士學位論文, 國立臺灣大學. 524 p.
- 袁古洁. 2001. 國際海洋劃界的理論與實踐. 法律出版社, 北京. 309 p.
- Adede, Ao. 1987. The System for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Martinus Nijhoff. Dordrecht. 285 p.
- Charney, J.I. and L.M. Alexander. 1993.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Vol. I. Martinus Nijhoff, Dordrecht. 549 p.
- Charney, J.I. and L.M. Alexander. 1993.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Vol. II. Martinus Nijhoff, Dordrecht. 551-1181 p.
- Evans, M.D. 1989. Relevant Circumstances and Maritime Delimitation. Clarendon Press, Oxford. 257 p.
- Hollick, A.L. 1981. US Foreign Policy and The Law of the Sea, Princeton Univ. Press, Princeton. 496 p.
- Hsu, R.T.S. 1983. Rational Approach to Marine Delimitation. *Ocean Dev. Int. Law*, 13, 103-113.
- Jagota, S.P. 1985. Maritime Boundary. Martinus Nijhoff, Dordrecht. 388 p.
- Koh, Tommy T.B. and Shanmugan Jayakumar. 1985. Negotiating Process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p. 68-86. I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ed. by M.H. Nordquist. Martinus Nijhoff Pub., Dordrecht.
- Kolb, R. 2003. Case Law on Equitable Maritime Delimitation: Digest and Commentaries. Nijhoff, Hague. 1184 p.
- Nandan, Satya N. and Shabtai Rosenne. 1993.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Vol. II. Martinus Nijhoff, Dordrecht. 1040 p.
- O'Connell, D.P. 1982.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 1. ed. by I.A. Shearer. Clarendon Press, Oxford. 634 p.
- Tanaka, Y. 2006. Predictability and Flexibility in the Law of Maritime Delimitation. Hart Publishing, Oxford and Portland. 425 p.

Received Feb. 23, 2007

Accepted Mar. 16, 2007